

난민법  
개정안

---

외교통상위원회

# 관련자료

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 661,172원

난민인권센터 발표 자료

2017년 난민 인정자 지원 생계비 41만 9,000원

# 관련자료

6개월까지 생계비 지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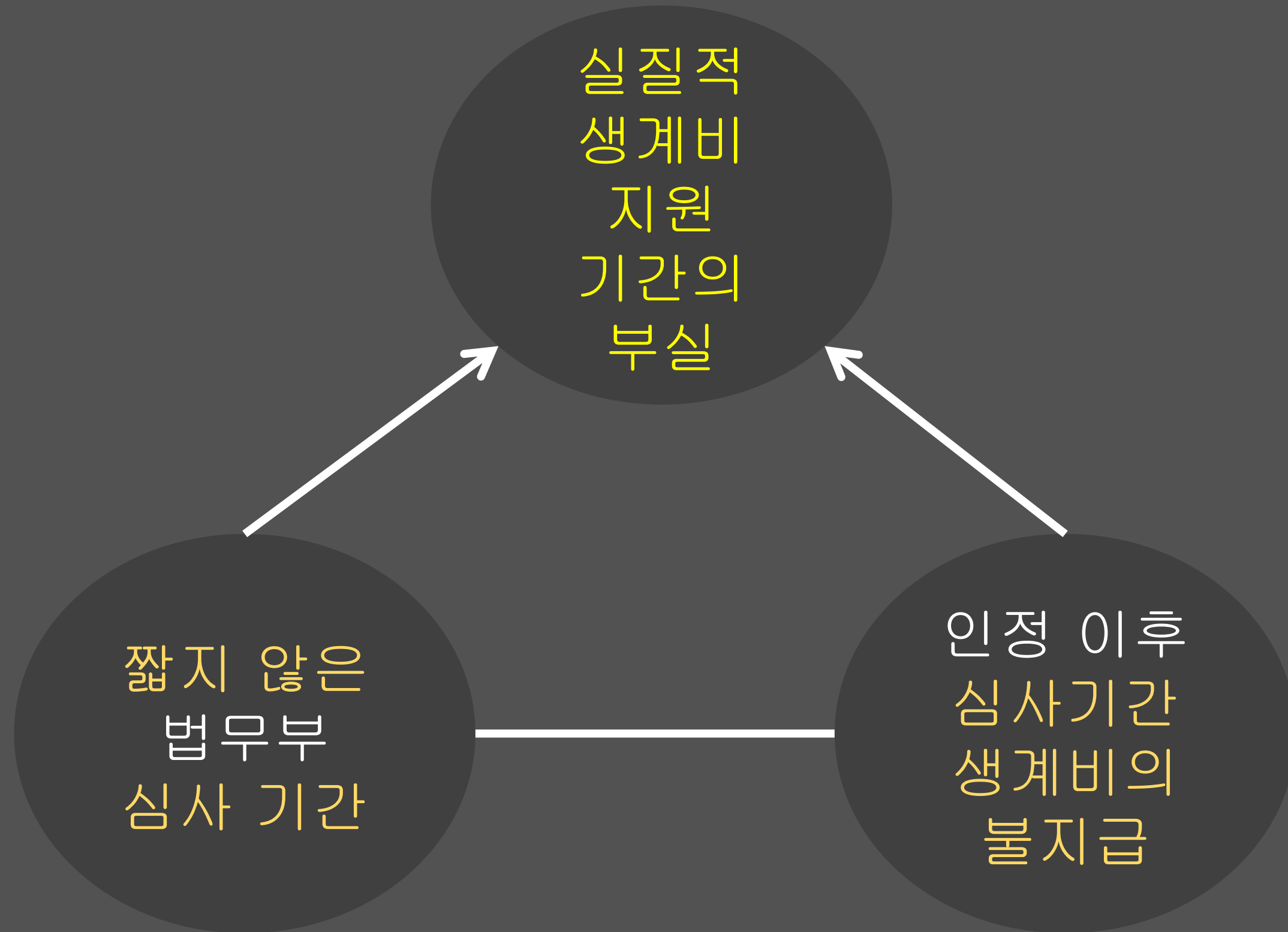
But, 실제 1인당 평균 생계비 지원기간 3개월  
10인



사진 및 자료 출처 :

<http://thel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6082420468266084&ref=http%3A%2F%2Fsearch.naver.com>

# 제한 이유



# 난민법 개정안

---

제 40조 개정

# 현행

## 난민법 제40조 <현행>

### 제40조(생계비 등 지원)

-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.

# 개정안

## 난민법 제40조 <개정안>

### 제40조(생계비 등 지원)

-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
- ③ 생계비 지원 신청이 인정된 난민신청자에 한하여, 생계비 지원 여부 심사에 소모된 기간을 포함해 난민법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의 생계비 지원을 보장한다.

# 신구문 대조표

## 난민법 제 40조 <현행>

제40조(생계비 등 지원)

-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.

<3항 추가>

## 난민법 제 40조 <개정안>

제40조(생계비 등 지원)

-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생계비 지원 신청이 인정된 난민신청자에 한하여, 생계비 지원 여부 심사에 소모된 기간을 포함해 난민법 제40조 1항에 의거하여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최대



# 기대효과

01

난민 인정자의 **생활 개선 및 인권 보장**

02

**국제사회**에서 대한민국의 **위상 함양 가능**

*Thank*

*you*

---

외교통상위원회